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104050 정보료지급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코스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여의도동)
대표이사 우주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경남, 남동환, 김상연

피 고 키움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6 (여의도동)
대표이사 권용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박철희, 최병민

변 론 종 결 2014. 4. 11.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3,541,157원 및 그 중 4,419,252,750원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세정보 제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금융투자 유관기관, 금융투자회사 및 기타 단체의 정보처리 서비스업, 자본
시장, 금융 및 경제관련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0. 4. 12. 증권의 투자매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거래의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시세정보제공료
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
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시세정보 : 시세정보라 함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 가공된 매매
관련 시세데이터 등을 의미한다.

제3조 (제공정보 내용 및 방법)

1. 시세정보 제공내용은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식시세정보, 주식호가수량정
보, 회원별 매매상황정보, KOSPI200 선물시세정보, KOSPI200 옵션시세정보와 KOSDAQ증
권(이하 'KOSDAQ'이라 한다)의 주식시세정보로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0년 4월 13일부터 2001년 4월 12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시세정보 제공의 대가)

1. 피고는 시세정보 제공의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시세정보제공료 및 통신회선사용료, 특별정보사용료(가입계좌당 3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정보사용료의 시행시기는 증권전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시세정보제공료 중 정보료 산정에 있어 가입계좌수 산정기준은 해당 월의 초일로 하며, 피고는 가입계좌수 내역을 매월 20일까지 공문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1항의 시세정보제공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본료(원)	정보료(원)	계(원)
주식시세정보	11,800,000	550,000	12,350,000
주식호가수량정보	1,000,000	50,000	1,050,000
회원별 매매상황정보	700,000	20,000	720,000
KOSPI200 선물시세정보	900,000	50,000	950,000
KOSPI200 옵션시세정보	900,000	30,000	930,000
KOSDAQ 주식시세정보	0	0	0
KOSDAQ 거래원정보	0	0	0
계	15,300,000	700,000	16,000,000

* KOSDAQ 시세와 KOSDAQ 거래원정보에 관한 정보이용료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정보료는 5,000계좌 기준이며, 추가 1,000계좌 당 20%씩을 추가하되, 정상가동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은 상기 금액으로 고정하기로 한다.

* 50,000계좌 초과시 정보료 초과분은 20% 할인하여 적용한다.

4. 원고는 시세정보제공료 중 기본료, 통신회선사용료 및 특별정보사용료는 해당 월의 초일에, 정보료는 익월 초에 피고에게 청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료 청구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가 시세정보제공료, 통신회선사용료 및 특별정보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 1일 당 연 20% 이자율에 준하는 연체료를 원고에게 가산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가가치세의 부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될 모든 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증권회사와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증권회사의 지점 수를 기준으로 시세정보제공료 중 정보료 부분(이하 '정보료'라 한다)을 책정하였으나, 지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고객들이 개설한 계좌의 수를 기준으로 정보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5,000계좌를 1점포로 환산하여 1점포당 정보료 70만 원을 책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1,000계좌마다 20%의 정보료를 추가적으로 책정하되, 총 계좌수가 5만 계좌를 초과하는 경우 정보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할인된다.

나. 시세정보 제공계약의 변경

1) 원고와 피고는 2003. 4. 17. 피고의 정보료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변경 전 정보료(원)	변경 후 정보료(원)
주식시세정보	550,000	30점포 이하 : 5% 인하 31~50점포: 30초과 점포당 추가 5% 인하 51~70점포: 50초과 점포당 추가 5% 인하 71~90점포: 70초과 점포당 추가 5% 인하 91점포~ : 90초과 점포당 추가 5% 인하
주식호가수량정보	50,000	
회원별 매매상황정보	20,000	
KOSPI200 선물시세정보	50,000	
KOSPI200 옵션시세정보	30,000	
KOSDAQ 주식시세정보	0	
KOSDAQ거래원정보	0	
계	700,000	

* 사이버증권사는 원계약서에 의하여 계좌수 기준으로 산정한 각 정보료를 변경 전 점포당 이용료로 나눈 값을 점포수로 적용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9. 4. 13. 주식선물시세정보 제공계약을 새로 체결(2009. 3.부터 소급적용)하고, 2011. 1.경 KOSPI200선물의 CME연계거래정보 제공계약을 추가로 체결(2011. 1.부터 적용)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상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2009.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적용되는 점포당 정보료는 다음과 같다.

정보명	적용기간 및 정보료(원)	
	2009.3 ~2010. 12	2011.1.~2013.12.
주식시세정보	410,000	
KOSDAQ주식시세정보	140,000	
주식호가정보	40,000	
KOSDAQ주식호가정보	10,000	
회원별매매상황정보	10,000	
KOSDAQ거래원정보	10,000	
KOSPI200선물시세정보	50,000	
KOSPI200옵션시세정보	30,000	
개별주식선물시세정보	50,000	
KOSPI200선물 CME연계거래정보	-	20,000
계	750,000	770,000

다. 피고의 정보료 지급내역

1)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 제6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일까지 가입계좌수 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설립초기인 2000. 4.경부터 2005. 1.경까지 원고에게 거래원장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정보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계좌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보받은 계좌수를 근거로 산정한 정보료를 포함한 시세정보제공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

는데, 2004년도 피고의 총 계좌수와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한 계좌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시세정보제공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준월	피고의 총 계좌수	원고의 통보계좌수	시세정보제공료(원)
2004. 1.	162,146	148,412	35,434,960
2004. 2.	166,057	152,932	35,903,120
2004. 3.	169,368	155,782	36,254,240
2004. 4.	174,063	158,808	36,605,360
2004. 5.	177,988	164,032	37,307,600
2004. 6.	181,021	166,778	37,541,680
2004. 7.	183,519	168,914	37,775,760
2004. 8.	186,102	171,451	38,126,880
2004. 9.	188,565	174,068	38,478,000
2004. 10.	191,707	176,616	38,699,760
2004. 11.	195,159	179,941	39,032,400
2004. 12.	198,654	183,125	42,475,920

2) 피고는 2005. 2.경 원고로부터 거래원장을 이관받아 원고에게 계좌수를 통보하고 시세정보제공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2005.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에게 통보한 계좌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시세정보제공료 내역은 별지 1 피고의 계좌통보 및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라. 시세정보 제공계약의 최종 변경

원고는 피고가 거래원장을 이관받아 직접 계좌수를 통보하기 시작한 2005. 2.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의 통보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2. 8. 1. 피고에게 피고의 2012. 3.말 기준 가입계좌수가 161만 개이므로 2012. 8. 정보료는 피고의 통보계좌수가 아닌 피고의 실제 가입계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보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4. 9. 피고의 정보료를 피고의 활동계좌수에 따라 산정하기로 합의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피고의 정보료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료 : 월 77만 원 x 점포수
- ② 점포수 : 피고의 활동계좌수/본지점당 계좌수의 평균
- ③ 활동계좌수 : 피고의 총 계좌수 - 통합, 폐쇄된 계좌수
- ④ 본지점당 계좌수의 평균 : 원고의 회원사들의 ‘활동계좌수/본지점수’의 평균값

따. 피고의 공인인증서비스 이용대금 지급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주문계좌수(실제 주문에 이용된 계좌수)를 기초로 산정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공인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통보한 실주문계좌수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급월	지급금액(원)	실주문계좌수
2007. 7.	74,992,500	121,538
2007. 11.	74,992,500	121,538
2008. 1.	-	-
2008. 4.	95,584,500	246,944
2009. 1.	237,240,300	254,810
2009. 4.	86,595,300	255,425
2009. 7.	83,943,200	324,595
2009. 10.	82,360,300	342,531
2009. 12.	87,039,700	301,833
2010. 4.	85,878,100	335,605
2010. 7.	85,152,100	325,286
2010. 10.	86,408,300	314,413
2011. 4.	88,986,700	350,626
2011. 7.	90,839,100	334,352
2011. 10.	94,550,500	358,840
2011. 12.	95,627,400	310,259
2012. 4.	98,103,500	341,897
2012. 7.	99,683,100	292,199

2012. 10.	99,801,900	277,748
2012. 12.	100,222,100	252,561

바. 이트레이드증권의 원고에 대한 정보료 지급

1) 원고는 2000. 4. 18.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이하 ‘이트레이드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이트레이드증권으로부터 총 계좌수 중 5,000계좌를 1점포로 환산하여 산정한 시세정보제공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시세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11. 26. 이트레이드증권과 사이에 원고가 일정한 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트레이드증권으로부터 총 계좌수 중 1만 계좌를 1점포로 환산하여 산정한 이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PowerBase 전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 이트레이드증권은 원고와의 합의 아래 위 시세정보 제공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PowerBase 전산서비스 이용계약과 동일하게 총 계좌수 중 1만 계좌를 1점포로 환산하여 산정한 시세정보제공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 피고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계좌수 신고

피고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회사들로부터 활동계좌수를 제출받도록 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007. 6. 부터 2013. 3.까지 피고의 활동계좌수를 신고해왔는데, 그 중 2010. 1.부터 2012. 12.까지의 신고내역은 별지 2 피고의 활동계좌수 신고내역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3. 4.경 착오로 그 동안 활동계좌수가 아닌 총 계좌수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부터 2013. 3.까지의 신고내역을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시세정보 제공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활동계좌수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정보료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제 활동계좌수를 축소하여 통보함으로써 정보료를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한 별지 2 피고의 활동계좌수 신고내역 신고계좌수란 기재에 따라 2010. 1.부터 2012. 12. 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정보료(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073,541,1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일정한 금액 수준을 시세정보제공료로 먼저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계좌수를 피고가 형식적으로 통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정보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6. 2.경 다른 오프라인 증권사들이 부담하는 시세정보 제공료 수준을 고려하여 피고의 시세정보제공료를 4,000만 원 정도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한 시세정보제공료를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용인하여 온 이상, 원고는 시세정보 제공계약이 위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현재까지 시세정보제공료를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또한 활동계좌수에 따라 정보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착오로 피고의 총 계좌수를 활동계좌수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 온 것이므로, 그 신고내역은 정보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활동계좌수에 따라 산출한 정보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거래원장을 보관, 관리해 오던 기간인 2004년도 피고의 시세정보제공료 지급내역상 원고가 피고의 총 계좌수보다 더 적은 계좌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산정한 정보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2.경 원고에게 정보료와 관련하여 그간 통보하던 계좌수(2006. 1. 기준 233,549개)를 계좌통폐합에 따른 계좌수, 즉 활동계좌수(2006. 2. 통폐합 계좌수 170,974개)로 통보하니 참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서에는 ‘피고는 가입계좌수 내역을 매월 20일까지 공문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고만 되어 있는 등 가입계좌수와 구별되는 활동계좌수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위 계약서나 이후의 계약서에도 피고가 지급할 정보료를 활동계좌수에 근거하여 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정보료를 피고의 실제 가입계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이후 2013. 4. 9.에 이르러 피고와 활동계좌수의 의미를 ‘피고의 총 계좌수 - 통합, 폐쇄된 계좌수’로 정의하고 활동계좌수에 따라 정보료를 산정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 당시 또는 그 후 2013. 4. 9. 변경계약 전까지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활동계좌수를 근거로 정보료를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상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최초 시세정보 제공계약서에는 문언적으로 피고의 가입계좌수, 즉 총 계좌수를 기준으로 정보료를 산정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거래원장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피고의 총 계좌수를 파악할 수 있었던 2004.에도 원고는 피고의 총 계좌수보다 적은 계좌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른 정보료를 지급받는 등 원고 스스로도 위 계약서에 따른 정보료를 산출, 적용하지는 아니한 점, ② 피고는 2006. 2.부터 2012. 11.까지 약 7년간 계좌수를 170,974개 내지 173,900개로 통보하였고, 위와 같이 통보한 계좌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시세정보제공료는 38,009,840원 내지 41,786,756원으로 큰 편차가 없는 점, ③ 피고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여 피고의 총 계좌수는 2012.경 150만 개를 돌파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성장은 관련업계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일정한 수준의 정보료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06. 3.부터 2007. 6.까지 16개월간 계좌수를 173,220개로 동일하게 통보하였는데 피고의 총 계좌수가 16개월간 전혀 증감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부터 2009. 3.까지 3년간 38,360,960원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2009. 4. 13.자 주식선물시세정보 제공계약이 적용된 이후인 2009. 5.부터 2010. 11.까지는 40,855,100원, KOSPI200선물의 CME연계거래정보 제공계약이 적용되는 무렵인 2010. 12.부터 2012. 5.까지는 41,786,756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통보한 계좌수에는 약간의 증감이 있으나, 피고가 지급한 시세정보제공료는 시세정보 제공계약의 명시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좌수를 환산한 금액이 아닌, 일정한 금액으로 증액되어 장기간 지급되어 왔고 역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⑥ 피고는 2007. 7.부터 2012. 12.까지 원고에게 공인인증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

면서 실주문계좌수를 121,538개 내지 358,840개로 통보하였고 2008. 4.부터는 24만 개 이상의 실주문계좌수를 통보하여, 원고 역시 피고가 그 무렵 통보한 17만 개 상당의 계좌수가 피고의 총 계좌수 내지는 실주문계좌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와 같은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증권은 시세정보 제공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변경계약 없이 원고와의 합의 하에 정보료 산정의 전제인 점포수를 5,000계좌당 1점포에서 1만 계좌당 1점포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정보료를 지급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명시적인 계약서와 다른 구두약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의 시세정보제공료를 피고의 총 계좌수나 활동계좌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아닌 월 4,0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피고가 그 금액에서 역산한 계좌수를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통보하고 시세정보제공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세정보 제공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와 같은 시세정보제공료의 지급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0. 1.부터 2012. 12.까지 활동계좌수에 따른 정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형

 판사 남수진

판사 고대석

별지 1

피고의 계좌통보 및 지급내역

월	통보계좌수	시세정보제공료(원)
2005. 4.	207,419	42,137,040
2005. 5.	210,873	42,469,680
2005. 6.	213,781	42,802,320
2005. 7.	216,770	43,134,960
2005. 8.	219,672	43,467,600
2005. 9.	222,598	43,800,240
2005. 10.	225,405	44,132,880
2005. 11.	228,106	44,465,520
2005. 12.	230,898	44,687,280
2006. 1.	233,549	45,019,920
2006. 2.	170,974	38,009,840
2006. 3.	173,220	38,360,960
2006. 4.	173,220	38,360,960
2006. 5.	173,220	38,360,960
2006. 6.	173,220	38,360,960
2006. 7.	173,220	38,360,960
2006. 8.	173,220	38,360,960
2006. 9.	173,220	38,360,960
2006. 10.	173,220	38,360,960
2006. 11.	173,220	38,360,960
2006. 12.	173,220	38,360,960
2007. 1.	173,220	38,360,960
2007. 2.	173,220	38,360,960
2007. 3.	173,220	38,360,960
2007. 4.	173,220	38,360,960
2007. 5.	173,220	38,360,960
2007. 6.	173,220	38,360,960
2007. 7.	173,450	38,360,960
2007. 8.	173,300	38,360,960
2007. 9.	173,414	38,360,960
2007. 10.	173,537	38,360,960
2007. 11.	173,421	38,360,960
2007. 12.	173,421	38,360,960
2008. 1.	173,631	38,360,960

2008. 2.	173,562	38,360,960
2008. 3.	173,531	38,360,960
2008. 4.	173,647	38,360,960
2008. 5.	173,425	38,360,960
2008. 6.	173,312	38,360,960
2008. 7.	173,395	38,360,960
2008. 8.	173,427	38,360,960
2008. 9.	173,319	38,360,960
2008. 10.	173,276	38,360,960
2008. 11.	173,350	38,360,960
2008. 12.	173,350	38,360,960
2009. 1.	173,427	38,360,960
2009. 2.	173,607	38,360,960
2009. 3.	173,588	38,360,960
2009. 4.	173,635	45,843,380
2009. 5.	173,426	40,855,100
2009. 6.	173,318	40,855,100
2009. 7.	173,611	40,855,100
2009. 8.	173,577	40,855,100
2009. 9.	173,621	40,855,100
2009. 10.	173,586	40,855,100
2009. 11.	173,594	40,855,100
2009. 12.	173,610	40,855,100
2010. 1.	173,586	40,855,100
2010. 2.	173,600	40,855,100
2010. 3.	173,590	40,855,100
2010. 4.	173,900	40,855,100
2010. 5.	173,610	40,855,100
2010. 6.	173,577	40,855,100
2010. 7.	173,586	40,855,100
2010. 8.	173,601	40,855,100
2010. 9.	173,333	40,855,100
2010. 10.	173,571	40,855,100
2010. 11.	173,635	40,855,100
2010. 12.	173,492	41,786,756
2011. 1.	173,571	41,786,756
2011. 2.	173,635	41,786,756
2011. 3.	173,571	41,786,756
2011. 4.	173,333	41,786,756
2011. 5.	173,445	41,786,756

2011. 6.	173,561	41,786,756
2011. 7.	173,394	41,786,756
2011. 8.	173,285	41,786,756
2011. 9.	173,364	41,786,756
2011. 10.	173,364	41,786,756
2011. 11.	173,179	41,786,756
2011. 12.	173,573	41,786,756
2012. 1.	173,479	41,786,756
2012. 2.	173,357	41,786,756
2012. 3.	173,251	41,786,756
2012. 4.	173,327	41,786,756
2012. 5.	172,945	41,786,756
2012. 6.	172,969	41,658,012
2012. 7.	172,903	41,658,012
2012. 8.	172,862	41,658,012
2012. 9.	172,911	41,658,012
2012. 10.	172,839	41,658,012
2012. 11.	172,917	41,658,012

별지 2

피고의 활동계좌수 신고내역

	신고계좌수	정정한 신고계좌수
2010. 1.	1,065,024	
2010. 2.	1,078,050	
2010. 3.	1,090,705	
2010. 4.	1,102,788	
2010. 5.	1,115,256	
2010. 6.	1,126,198	
2010. 7.	1,138,195	
2010. 8.	1,150,581	
2010. 9.	1,162,309	
2010. 10.	1,176,460	
2010. 11.	1,193,950	
2010. 12.	1,210,233	
2011. 1.	1,231,187	
2011. 2.	1,248,535	
2011. 3.	1,271,099	
2011. 4.	1,294,313	
2011. 5.	1,310,048	
2011. 6.	1,323,546	
2011. 7.	1,341,678	
2011. 8.	1,378,103	
2011. 9.	1,398,161	
2011. 10.	1,416,335	
2011. 11.	1,435,305	
2011. 12.	1,422,497	
2012. 1.	1,472,119	
2012. 2.	1,496,227	
2012. 3.	1,515,155	
2012. 4.	1,529,995	
2012. 5.	1,544,228	
2012. 6.	1,554,615	
2012. 7.	1,565,642	
2012. 8.	1,575,811	
2012. 9.	1,587,785	
2012. 10.	1,599,756	
2012. 11.	1,581,701	765,127
2012. 12.	1,588,287	771,713